

의안번호	2219602
의 퇴 인	최수진의원
회 답 일	2026.7.2.
추계번호	26E320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(1억원)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2조제3호커목, 제5호아목 신설 (비과세소득)	○ 출산·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 신설 - (현행)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자녀 1명당 1억원 이내의 금액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조제3호커목, 제5호아목 신설 (비과세소득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근로자(종교관련 종사자)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(종교단체)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자녀 1명당 1억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-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출산 관련 급여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(제12조제3호머목)
 - 또한 출산 관련 급여와 별도로,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(제12조제3호머목)

- 반면, 종교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(제12조제5호아목)
- 따라서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종교관련 종사자 중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인원 규모와 자녀 출산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액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함
- 그러나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자녀 출산을 이유로 종교단체가 지급하는 추가 급여의 지급 인원 및 지급 규모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,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세수효과 추계 곤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출산 관련 급여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
- 그런데 개정안은 기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, 근로자(종교관련 종사자)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(종교단체)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자녀 1명당 1억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'출산 관련 급여 전액 비과세'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'1억원 한도 비과세' 규정이 신설되어 두 규정 간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,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